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명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의결정족수 규정 중 모순된 규정에 대한 개정 및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명)

나. 종전의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함(안 제7조제3항)

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전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제2조제3항제1호 중

“풍부한 자 5인 이상” 을 “풍부한 사람” 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필요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를 “제4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결정권을 가진다” 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서무”를 “사무”로 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무”를 “사무”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u>	<u>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의</u> -----
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2조(구성) ① <u>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	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
1.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상</u>	1. ----- <u>풍부한 사람</u>
2.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2. <u>그 밖에</u> ----- <u>사람</u>
④ <u>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u>	④ ----- ----- <u>필요할 때에는</u> ----- -----

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생략)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략)

1.~ 2. (생략)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제3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

② 제1항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u>있다.</u> 제7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u>결정권을</u> <u>가진다.</u>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 는 <u>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u>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u> <u>“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u> <u>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u> <u>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u>사무를</u>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u> <u>와 서기 각1인을 둔다.</u> ② (생략)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u>사무를</u>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생략) 1. ~ 4. (생략) 5. <u>기타</u> 중요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u> <u>행에</u> 관하여 <u>기타 필요한 사항</u> <u>은</u>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부결된</u> <u>것으로 본다.</u>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 는 <u>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u> <u>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u> <u>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u> <u>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u> <u>지급할 수 있다.</u>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u>사무를</u> -----<u>간사</u> <u>1명과 서기 1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무</u>----- ----- 제10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중요사항 제11조 (시행규칙) ----- <u>시</u> <u>행에</u> <u>필요한</u> -----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헌법 - 제49조 ☐ 지방자치법 - 제64조(의결정족수)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

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